

□ 제130회 이사회 개최결과

외 사	개최일자	참석이사	의 안 내 용	가 결 여 부	비고						
제130회	2019. 2. 27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재 적</td> <td>10명</td> </tr> <tr> <td>참 석</td> <td>8명</td> </tr> <tr> <td>불 참</td> <td>2명</td> </tr> </table>	재 적	10명	참 석	8명	불 참	2명	<p>○ 직제규정증개정규정(안)</p> <p>◆ 내 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급별 정원조정 : 396명 ⇒ 397명 (증 1명) · 일반직 : 6급 1명 	원안가결	
		재 적	10명								
참 석	8명										
불 참	2명										
<p>○ 참 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이 사 - 의 장 최성용 - 이사장 강형신 - 이 사 민경섭 - 이 사 정영준 (代 김건우) - 이 사 성웅경 - 이 사 우성대 - 이 사 이태관 - 감 사 최상국 	<p>○ 취업규정증개정규정(안)</p> <p>◆ 내 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20조(휴일) 제4호 내지 제5호 개정 · 제4호 공단창립기념일 → 삭제 · 제5호 기타 정부 또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날 → 기타 정부에서 지정하는 날 - 제22조(연차유급휴가등) 제2항 개정 · 1년미만 근속자와 1년간 8할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	원안가결									
			<p>○ 인사규정증개정규정(안)</p> <p>◆ 내 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1조의3(채용서류의 보존) 관련 조항 신설 - 제26조(파견) 제1항 제1호 중 장기 교육 사항 추가 개정 - 제27조(휴직자 등의 결원충원) 제1호 개정 및 제5호 신설 - 제52조(징계) 제1항 제6호 채용비리 및 제2항 관련자 업무배제 조항 신설 - 제59조(징계사유의 시효) 제1항 중 채용비리 관련 징계시효 강화 	원안가결							

